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거치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5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9조 【해지환급금】
- 제 10조 【배당금의 지급】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 제13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연금개시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전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	개인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확정연금(5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2.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개시일로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제 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금의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매년 생존연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 사망시 : 사망보험금

제 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특약의 소멸) 및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10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호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애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3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제1호)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연금개시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연금개시일부터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사유	연금개시일부터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 있을 때 (다만, 10회 보증지급 기간 내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연금개시일부터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연금개시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사망보험금 (약관 제7조 제2호)

지급사유	지급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 전에 사망시	전환일시금의 10% +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 (주) 1.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3. 종신연금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지급 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 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다만,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49, U80~U89)에 해당하는 질병

주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12조 2항 관련)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table border="1"><tr><td>1년 이내</td><td>공시이율의 50%</td></tr><tr><td>1년 초과 기간</td><td>1%</td></tr></table>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약관 제9조 제1항)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즉시형)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 제 5조 【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 8조 【해지환급금】
- 제 9조 【배당금의 지급】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 제12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약관 (즉시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 개시일로 합니다.[이하 보장개시일을 이 특약의 “계약일”로 봅니다] 이 경우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 계약(부가된 특약 중 함께 전환하는 특약을 포함하며,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일 전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	개인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부부계약(정액형, 체증형, 소득보장형)
확정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상속형	

제 2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 부부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개인계약의 경우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합니다.
 -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전환전 계약이 2인(3인,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계약자 중 특약 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1인]로 하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 지급일까지입니다.

제 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부부계약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 사망]이나 확정연金の 확정연금 지급기간 종료 등으로 이 특약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조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은 전환전 계약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및 기타 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후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이하 “전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개시일 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생존연금(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특약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말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애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2조 【전환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환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의 약관 중 『보험계약대출』 및 『계약내용의 변경 등』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2)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정액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체증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1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하고, 11차년 이후에는 10차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소득 보장형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시점부터 10차년도까지는 1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10회 보증지급)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	지급 사유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회 보증지급 기간 내에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지급액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액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전환일시금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 지급 [단, 상속연금의 지급시기는 연단위 연금연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만1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지급하며, 분할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월 선택시에는 만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3개월 선택시에는 만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매3개월마다, 6개월 선택시에는 만6개월 경과시점부터 매6개월마다 지급]

- (주) 1.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2. 「공시이율」(보험계약일부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는 연복리 2.5%, 10년 초과는 연복리 2.0%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3. 종신연금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 10%)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10회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10회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연금지급 개시후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 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약관 제11조 2항 관련)

■ 생존연금(약관 제7조)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table border="1"><tr><td>1년 이내</td><td>공시이율의 50%</td></tr><tr><td>1년 초과 기간</td><td>1%</td></tr></table>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약관 제8조 제1항)

적립 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1%

적립 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공시이율 + 1%

적립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 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